

##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

제정 2021. 12. 1 규칙 제160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양시 규칙 중 「지방자치법」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”를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6조”를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9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”를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
제5조(「안양시 사무위임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일부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일부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6조(「안양시 지방세 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지방세 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

부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